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2. 2.
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1월 8일

나. 발 의 자: 이규선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규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대행기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, 영등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사무처리 등(안 제3조)

다. 경비 지원(안 제4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제정안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(지역회의 등)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운영과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3조(운영·사무처리 등)에서는 통일자문회의 사무 일부를 대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4조(경비의 지원)~안 제5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에서는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, 지원신청과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안건은 협의회에 그동안 상위법령인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9조(사무기구), 제29조(지역회의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(경비의 지원)에 따라 지원하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, 입안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,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에서 자치구 단위의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서 지역회의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항, 표창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.
- 아울러,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고 있기에 본 조례안 제정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33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: 2024. 11. .

발 의 자: 이규선·이순우·양송이  
우경란·임헌호·이성수  
김지연 의원(7인)

## 1. 제안이유
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대행기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, 영등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사무처리 등(안 제3조)
- 다. 경비 지원(안 제4조)
- 라.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(안 제5조)
- 마. 지도 및 감독(안 제6조)
- 바. 행정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(안 제8조 및 제9조)

사. 표창(안 제10조)

### 3. 제정안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
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
###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등을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”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의”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영등포구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**제3조(운영·사무처리 등)**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1.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2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3.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.

**제4조(경비의 지원)**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화통일에 관한 영등포구의 여론수렴 사업
2.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
3. 영등포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
4.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
5. 영등포구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
6. 그 밖에 영등포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** ① 협의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보조금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

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도 및 감독)**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행정 지원)**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9조(공공시설의 이용)**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.

**제10조(표창)**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 기반 구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